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3
----------	------

발의연월일 : 2024. 12. 4.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등 12인

1. 제안이유

세수 결손으로 인해 향후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달성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작성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와 의원을 일괄하여 “의원등”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발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

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등의 의안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의안에의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긴급하게 의안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위원회의 의안에 한정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그 안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근거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관계법령·조례·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구분 계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일정범위로 나타내거나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 등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작성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의 제출·발의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의안의 제출·발의자인 의원등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계 비용추계서의 작성 또는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해줄 것을 의장에게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등은 이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을 받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의원등이 제출·발의하는 의안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나.

2. 재정수반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덧붙이는 의견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작 성 자

소속 및 직위

성명(연락처)

작성요령

I.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 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 예상 비용을 재정수반요인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소속·직위·성명·연락처를 기재하되, 전문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작 성 자

소속 및 직위

성명(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조례)」(2023.12.28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9조(작성대상)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삭제(2023. 12. 28.)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제10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

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 심의회“라 한다)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③ 삭제(2023. 12. 28.)